2023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에로 개선 지원시업」 운영지침(안)

2023. 4.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선정절차 2
제3장	협약 8
제4장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지급 11
제5장	특약사항 ······ 15
[서식] …	
[별표] …	······ 5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2023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전담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공고·선정·관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테크노파크를 말한다.
- ② "주관기업"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소재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공정기술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③ "공급기업"이라 함은 '주관기업'에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의 솔루션 공급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④ "지원사업"이라 함은 인천소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의 불량률 감소, 생산비용 절감, 생산량 증대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을 말한다.
- ⑤ "사업비"라 함은 주관기업이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된다.
- ⑥ "채용약정인원"이라 함은 주관기업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채용약정한 인원을 말한다.

제2장 선정절차

- 제3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의 '뿌리기업 컨설팅'에서 연계된 기업을 주관기업으로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 공고를 통해 주관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의 목적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세부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방식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은 제2항의 공고내용을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 서비스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접수)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기업을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 서비스 비즈오케이로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및 지정된 제출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접수하여야하다.
 - ② 지정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1부
 - 2.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4. 공장등록증 1부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
 -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 '21, '22)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당해연도 말일 기준 예시) 20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은 '2020.12.31'로 한다.
 -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7. 표준재무제표('20, '21, '22) 각 1부
 - 공고 마감일 기준 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9년, 20년, 21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 8.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9.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 11. (선택) 서류평가 가점서류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최대 1개 3점 인정
- 12. (선택) 현장평가 가점서류 :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서(비전기업, 인천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단, 인증기간,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하며 1개 당 5점, 최대 2개 10점 인정
- ③ 전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보완조치(회신)가 없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주소지를 '인천광역시'로 두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2022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뿌리기업이어야 한다.
 -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별표2]에 포함되는 뿌리기업
 -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발급받은 사업장
 - ② 제1항을 만족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1. [영업이익 감소]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9년, 20년, 21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 2. [고용 감소]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

비 감소한 기업

- 3. [위기 산업군] [별표2]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 산업에 해당하는 시업장
- ③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채용을 약정하여야 한다.
 - 1. 지원금 1,500만원 당 1명 의무채용 약정(최대 3,000만원, 2명)
 - 2. 채용약정인원은 협약일로부터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1년(365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채용약정인원 중 1명 이상은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 주지 제약 없음.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를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 ④ 신청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내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 1. 인천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2.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경우
 - 3.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5. 휴 · 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6.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7. 2022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 8.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23조의 규정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신청한 기업
- 10. 「2023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또는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11.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
- 12. 인천지역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13.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14.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평가심의조정 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평가 및 심의조정을 위하여 평가·심의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평가 및 심의한다.
 - 1. 대상과제 선정, 평가 등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2. 사업적정성 검토 및 지원의 시급성, 사업비산출 적정성에 관한 사항
 - 3. 사업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 4. 사업비 등의 환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5.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평가심의조정 위원회는 산학연 뿌리기술 전문가 및 노무사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전담기관은 전문가 활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격심사/서류평가) ①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지원 자격심사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심의조정위원회 Pool을 활용하여 외무전문가에 의한 자격심사/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격심사/서류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심사 방법/서류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참여대상 기업여부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적합 - 영업이익 감소율: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 - 고용 감소율: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 - 위기산업군: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적/부
	뿌리기업 여부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적합-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업종분류 번호	적/부
자 격	상시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합 - 2022년 12월 31일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준	적/부
심사	기업규모	■ 매출액 5억 원 이상이면 적합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적/부
	기업소재지	■ 기업소재지가 인천이면 적합	적/부
	부채비율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면 적합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적/부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적/부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적/부
		자격심사 항목 모두 적합 시 통과	

	평기	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	점		득점
	업력유지 (48)	업력유지	■ 뿌리기술 활용 업력 평가	9년이상	6년이상~ 9년미만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0)		(사업자등록증 기준)	10점	8점	6점	4점	
		영업이익	■ 3년 평균 영업이익 감소여부 (표준재무제표기준 20년 대비 20년 21년	5% 이상	4% 이상~ 5% 미만	3% 이상~ 4% 미만	3% 미만	
서			22년 영업이익 평균)	10점	8점	6점	4점	
류	기업안정성	이자보상비율	■ 3년 평균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금융비용)	1 이하	1.2미만~ 1초과	1.4미만~ 1.2이상	1.4이상	
평 가	(30)		(표준재무제표가준 20년 21년 22년 평균)	10점	8점	6점	4점	
1		매출액 영업이익률	■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3% 미만	5% 미만~ 3% 이상	7% 미만~ 5% 이상	7%이상	
		8 합의 극팔	(표준재무제표기준 20년 21년 22년 평균)	10점	8점	6점	4점	
		유형자산 증가율	■ 3년 평균 유형자산 증가 여부 (표준재무제표기준 20년 대비 20년 21년	3% 미만	5% 미만~ 3% 이상	7% 미만~ 5% 이상	7%이상	
	성장가능성 (20)	o/l型 	22년 유향자산 평균	10점	8점	6점	4점	
		연구개발비율	■ 3년 평균 연구개발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3% 미만	5% 미만~ 3% 이상	7% 미만~ 5% 이상	7%이상	

			(표준새무제표가 준 20년 21년 22년 평균)	10점	8점	6점	4점		
			■ 3년 평균 고용증가율 (증가인원/전체 직원수)	5% 미만	10% 미만~ 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5% 이상		
	고용안정성		(20년 말 상시 근로자 수 대비 20년, 21년, 22년 말 상시근로자 수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	20점	17점	14점	12점		
	(40)	청년근로자 장기근속률	, a ` ` - · · · · - · · ·	3% 미만	5% 미만~ 3%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이상		
		· 경기근국팔	근속근로자수/전체 직원수) (22년 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	20점	17점	14점	12점		
	가점(6)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여부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가점 3점				
	(중복가능)	지역위기산업	■ 뿌리산업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장 (뿌리산업 범위 업종 분류번호 기준)		가전	! 3점			
	서류평	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총점	100+α			

[※] 공고 마감일 기준 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9년, 20년, 21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 제8조(현장평가) ① 전담기관은 서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심의조정위원회 Pool을 활용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컨설팅 연계로 선정된 기업은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③ 현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수혜기업 최종 선정한다.

		ᇛᇪᇸ	ᄪᄺ		등급	급별 비	H점		ᆑ긴저스
		평 가 항 목	배점	수	우	미	양	가	평가점수
		·생산성 향상 정도	20.0	20.0	16.0	12.0	8.0	4.0	
	설비적정성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10.0	10.0	8.0	6.0	4.0	2.0	
	(40)	·현장애로개선을 위한 설비 개량의 적정성	10.0	10.0	8.0	6.0	4.0	2.0	
현장 평가	사업추진력 (20)	· 투자능력, 경영안정성	20.0	20.0	16.0	12.0	8.0	4.0	
17G	계획구체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20.0	20.0	16.0	12.0	8.0	4.0	
	(40)	· 인력·시설 운용계획의 구체성	20.0	20.0	16.0	12.0	8.0	4.0	
	가 점	•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알하기 좋은 뿌리기업 안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서비전기업 안천유망중소기업 중건성장사다리기업 - 1개당 5점, 최대 2개 10점	10.0						
	평기	위원 2인의 평균점수가 60점			통점 1	00±~			
	이상역	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oo+u			

④ 동점 시 선정 기준은 설비적정성, 계획구체성, 사업추진력 고득점 기업 순으로 한다.

- 제9조(원가계산) ① 전담기관은 평가·심의조정 위원회 추천대상 기업의 사업비에 대해 외부 원가계산기관을 선정하여 원가계산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원가계산은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평가·심의조정위원회 상정 및 협약체결을 위한 적정 사업비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원가계산 결과가 사업비 대비 차이가 $\pm 10\%$ 이상 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 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원가계산의 분석 비용은 주관기업이 전액 부담하며 전담기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내 원가계산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 제10조(주관기업 선정) ① 현장평가 점수에 따른 우선순위(컨설팅 연계일 경우에 는 현장평가 없음),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조정위원회에서 주관 기업 선정 및 후보기업 등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 1. 전담기관은 최종 선정결과에 대하여 주관기업에게 통보하고 협약과 관련 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2.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선정결과의 통보 이후 협약 체결을 위한 일체의 사항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의 협약포기 및 기타 지원 제외사항 발생 시 후보기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 보완,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주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협 약

- 제11조(협약) ① 선정된 주관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전담기관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1.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협약서
 - 2.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 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사업비 청구서
 - 4. 주관기업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 5.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 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 제12조(협약변경) ① 주관기업은 사업의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업은 협약변경 사항에 따른 구비서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협약변경 승인요청 공문(공통 서류)
 - 2. 평가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비서류

변경 내용	준 비 서 류
최종 사업목표 또는 내용의 하향 변경	·사업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변경 (대체, 분사, 탈퇴, 추가 등)	·변경 전후 대비표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기업)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기관(기업)에 대한 정보자료
단가 1억원 이상 사업비 변경	·사업비 변경 전후 비교표 ·관련 견적서 및 카탈로그

3. 전담기관 승인사항

변경 내용	준 비 서 류
총괄책임자 변경	·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재직여부 증빙서류
단일 품목으로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 사업비 변경	·사업비 변경 전후 비교표 ·관련 견적서 및 카탈로그
사업비의 비목별 20%이상 변경	· 변경 내역

- ③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사업비의 변경, 총괄책임자의 변경 및 주관기업의 인수·합병, 법인사업자 전환 등의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협약중지) ①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 1.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 2.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관련 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 4.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의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5. 주관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 6.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 제14조(협약해약)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사업 수행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 성이 없어 진 때
 - 2.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당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주관기업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5. 기타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전담기관은 제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 지원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사업관리

제1절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 제15조(사업비의 구성)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성하되, 전액 현금으로 분담한다.
 - ②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사업비를 교부받을 법인명의의 통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또는 회사명 표기)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관기업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비의 지급)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업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주관기업에 후지급 100%로 지급한다.
 - ②주관기업은 전담기관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주관기업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기업부담금과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공급기업에 지급한다.
 - ④전담기관은 보조금 지급 시 주관기업의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관기업이 제13조, 제14조의 해당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7조(사업비의 관리) ① 사업비는 사업완료 정산 시 협약 사업신청서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확인하게 되며, 주관기업은 거래이체 내역서 및 품목명세가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 ②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사업비의 정산) ①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을 위한 정산보고서를 주관기업 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주관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 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업의 장은 제2항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주관기업은 사업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최종 정산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상급기관(인천광역시 등)이나 전담기 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사업비 환수) ① 전담기관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 "실 패"인 과제의 경우 주관기업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약정서 인원이 채용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③ 주관기업이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 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며, 지급 후 중단되는 경우 전액 환 수하여야 한다.
 - ⑤ 전담기관은 환수한 지원금을 정부로 반납처리 할 수 있다.

제2절 사업관리 및 평가

- 제20조(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은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주관기업에 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및 요령을 사전에 안내토록 한다.
 -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점검사유가 발생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현장 확인 위원으로 동행할 수있다.
 - 1. 협약 중지 및 해약 사유 발생시
 - 2. 계획서 대비 진도 부진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③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종합 검토결과 "계속", "중단", "보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며, 중단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1. 계속 : 중간점검 시 사업계획서 상 계획된 추진일정 및 사업목표를 성실 히 달성하고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성이 인정되며 협약 사업기간까지 계속 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2. 중단 : 보조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사업 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 3. 보류 : 진도점검 결과 기술적 검토 및 판단을 위해 평가·심의조정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 ④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결과 중단, 보류로 판단된 과제의 경우 평가·심의조정 위 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업은 최종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이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의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제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 제22조(최종 결과평가) ① 전담기관은 외부 전문가의 평가·심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의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성공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2. 실패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② 최종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배점		평가점수					
		매감	수	우	미	양	가	3/13T	
최		·생산성 향상 정도	10.0	10.0	8.0	6.0	4.0	2.0	
종 평	성과의 질적 수준	·작업환경 개선 정도	10.0	10.0	8.0	6.0	4.0	2.0	
가	실적 수준 () (40)	·설비 개선 정도	10.0	10.0	8.0	6.0	4.0	2.0	
		· 사업의 파급효과	10.0	10.0	8.0	6.0	4.0	2.0	

설비교육 및 안전환경	·설비교육 수준	10.0	10.0	8.0	6.0	4.0	2.0	
수준 (20)	·작업자 안전성 정도	10.0	10.0	8.0	6.0	4.0	2.0	
사업비집행 적절성 (10)	• 견적서 대비 사업비집행 내역	10.0	10.0	8.0	6.0	4.0	2.0	
사업의 타당성 (15)	ㆍ사업 내용의 타당성	15.0	15.0	12.0	9.0	6.0	3.0	
신규채용인력 달성도 (15)	·채용약정 신규인력 운용의 적정성	15.0	15.0	12.0	9.0	6.0	3.0	
	2인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채용약정 미준수시 사업 실패)		,	총점	100			

- ③ 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상급기관 및 주관기업의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참여제한)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등 각종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참여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제24조(사업추진 보고)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처분 등의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급기관(인천광역시 등) 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주관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경우
 - 2.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재확정) 한 경우
 - 3.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의 확정을 완료한 경우
- 제25조(사업결과의 공개)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수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을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제26조(사후관리)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이 수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 및 채용 약정인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월 간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5장 특약 사항

- 제27조(채용약정인원 채용) ① 주관기업은 채용약정한 인원을 협약 시작일 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채용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채용약정인원이 포함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확인서 1부
 - 2. 채용약정인원 근로계약서 1부
 - 3. 채용약정인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4. 채용약정인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 자용) 1부
 - ② 채용약정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한 자
 - 3.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주40시간 월 최저임금 기준)
 - 4.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닌 자
 - 5.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③ 주관기업의 신규채용 약정인원원 중 1명 이상은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해야 한다.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 주지 제약 없음.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를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 제28조(고용유지) ① 주관기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채용약정서를 제출하고 채용약정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 1. 주관기업은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정부지원금 15백만원 당 신규인력 1

명을 채용해야 한다.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채용된 신규인력)

- 2. 주관기업은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 내에 채용약정한 신규인력을 채용 후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전담기 관에 보고하고 중도퇴사 인원의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일까지 근무일을 일할 계산하여 1년에서 뺀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대체 채용하여 유지해야 한다.
- 3. "신규인력"이라 함은 (주민등록등본상)대한민국 국민에 한하며 주관기업 대표 및 임원의 직계가족, 친인척(4촌이내)의 채용은 제외한다.
- 4.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의 채용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를 36개월 간 제한한다. ② 주관기업은 제 1항 2호의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요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 4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 또는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2. "대체채용인원"의 근로계약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3. 전담기관이 채용인원에 대한 유지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기타 자료

서 식

[서식 1]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 18
[서식 2]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 24
[서식 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평가위원 위촉승낙서 ············· 25
[서식 4]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26
[서식 5]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서명록 ······· 27
[서식 6]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자격심사/서류평가표 ······· 28
[서식 7]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현장평가표 ······· 29
[서식 8]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협약서 ······· 30
[서식 9]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용인감계 ······· 33
[서식 10]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34
[서식 11]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35
[서식 12]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정산보고서40
[서식 1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채용약정인원 개인정보동의서 ・・・・・・ 44
[서식 14]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최종평가표45
[서식 15]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요청서46
[서식 16]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조기종결 신청서47
[서식 17]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 변경 신청서48
[서식 18]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 포기 신청서49
[서식 19]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완료 기간연장 신청서 50
[서식 20]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서 51

【서식 1】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접수번호					7	접수일				
대·중·소	협력	부모덕	텔 기	반 현		로 개2	선 지	원 /	사업계	획서
지원분야									· 프레스 □ 어□ 엔지니ㅇ	
과 제 명	국	문								
조리 리 리	기약	설명				사업자	등록번호	_		
주관기관	주	소				<u>'</u>				
	성	명				생년	1월일			
총괄	부	서				전	화			
책임자	직	위				팩	스			
	E-n	nail				휴디	l 전화			
	성	명				생년	1월일			
실무	부	서				전	화			
책임자	직	위				팩	스			
	E-n	nail				휴디	· 전화			
총 수행기간			20)	~ 2	0	(개월)		
소요사업비		총	계		정부	-지원금			기업부담금	<u>.</u>
(원)										
고용창출				당해	연도 채용	예정인원	년 () 및	형		
위와 같이 20 기반 현장애호							에 의거	하여 1	대·중·소 협	력모델
				20 ¹	선 월	일				
주관기관 5	녕				대표이시	·}			(인)	
인천테 <i>크</i> 노파	크 원정	가 귀하								
본 사업의 효 따라 알려 드리 * 수집/이용 등	비오니,	운영 <u>:</u> 이에 동	및 관리 -의하여	를 위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수		-하는	것을 관련	법령에

1. 신청기업 현황

업 체 명				사 약	は자 번	호		
대표 자명				대 전	표 화 번	자 호	~	
설립일자			대이	표 메	자 일			
본 사 주 소	도, 광역시,특별시	Ŋ		세부	ーテ소		☎ (Fax	
공 장	도, 광역시,특별시	Ŋ		세부	<i>! 주소</i>		Tax)
주 소							(Fax)
업 종	① 뿌리산업분야 업종	조		자	본	금		원
В	② 산업분류표 기준 (공장등록증 기준		司三	. ,	<u> </u>	ц		<u> </u>
	지표	2	2020			202	21	2022
기 업 현 황	매출액(원)							
(최근3년)	영업이익률(%)							
	종업원수(명)							
	구분	2	2020	2021			21	2022
재 무 현 황	자산							
(최근3년)	매출							
	부채							
주요생산품				주요	. 공정	예/	시) 사출,	정밀 가공, 도금 등
주요 납품처								
기반 시설	(旣구축되어 있는	既구축되어 있는 생산설비에 대해 명칭, 수량, 도입년도 등 간략히 설명)						
특이사항	수상, 인증, 정부과	l <i>제 참여</i> -	드					

	설비개량 필요성 및 내용 ト) 설비개량 필요성
L	ł) 설비개량 내용

3. 설비개량 구축비 산출내역

가) 사업비 총괄

(단위: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정부지원금		*소수둘째자리까지
자기부담금		*소수둘째자리까지
합 계		100%

나) 소요명세 (견적서 첨부 필요)

구분	내역	단가	회수(회)	금액(원)
기자재 및 시설비				
작업기능 구축비 (작업툴, 센서 시스템 등)				
초기운용 및 사용자 교육				
기타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				
기타				
합계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으로 견적서 첨부 필수, 부가세는 기업부담으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4. 설비개량 기대효과

가) 개선 효과		
- 불량률 (필수)		
- 생산성 (필수)		
- 기타 기대효과		
나) 고용 효과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채용 약정서

본 사업장은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선정 및 협약 이후 채용약정 인원에 대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채용 시점부터 1년 이상 유지할 것을 약정합니다. 또한, 추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채용 유지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비 환수 등관련 사업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사 업 장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채용 담당자	
채용 약정인원(명)	
채용 시기	협약 시작일 ~ 협약 종료일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2】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7	언정부	화요	민	사업참여	동의	Н
			ᄍ			>

기 업 명	사입	날자 등	등록변	<u> 보호</u>			
대표자명	기	업	형	태	□개인	□법인	

1. 기업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이용 목적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참여 : 접수/지원 등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	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기업정보 항목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대보험 가입현황 •이메일	. •연락처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여	용
보유이용 근거	• 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기업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정보를 수 인천테크노파크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 며, <u>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u>	
- 기업정보의 수기	집 및 이용 목적 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제3자 (제공 기관)	• 인천광역사(군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본원 업무 관련	
제공하는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4대보험 가입현황 • 이메일 • 연락처	
기업정보 항목	• 공장등록증 등 사업 참여 신청을 목적으로 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기업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u>미동</u> 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시 해
- 기업정보의 제3	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도의하지 않	음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및 지원기업 지원 • 동 통합관리시스템	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 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즉	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용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 보 및 창휴폐업일		병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으 법 제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5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	·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	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제공된 목적달성기업정보 수집 시		점 이후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	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l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 의	l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
원사업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운영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	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	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
였습니다. 미동	의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24 -

평가위원 위촉승낙서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성 명		소 속			
0 0		직 위			
주민등록 번 호	-	담 당 (부서)			
주 소					
전 화	() -	휴대전화			
e-Mail					
계좌번호			(은행명 :)	
	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 '의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	
	2023.	()			
	평가위원명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4】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 이용 목적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평가수당 지급관련 근거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담당업무)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 e-mail 주소 ☑ 팩스번호 ☑ 계좌번호				
보유・이용 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보유ㆍ이용 근거	인천TP「개인정보보호지침(2016. 12. 29 제정)」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 수집 동 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평가수당 등이 미지급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당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u>해당란에 √표시</u>)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 수집 동의				
수집 · 이용 목적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평가수당 지급관련 근거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보유ㆍ이용 근거	인천TP「개인정보보호지침(2016. 12. 29 제정)」제12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 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평가수당 등이 미지급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달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u>해당란에 √표시</u>)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	세3자 제공 동의				
수집·이용 목적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평가수당 지급관련 근거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보유ㆍ이용 근거	인천TP「개인정보보호지침(2016. 12. 29 제정)」제12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인천광역시(군, 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본원 업무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 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평가수당 등이 미지급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u>해당란에 √표시)</u>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2023() 동의자 확인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서 명 록 -

□ 일시 : 2023. . .()

□ 내용 :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평가

□ 참석자명

구분	기관명	성명	연락처	직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서식 6】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자격심사/서류평가표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자격심사/서류평가표

□ 과제	[혅황
------	-----

		평가일
분 야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
		정부지원금
업 체 명	총사업비((원) 자기부담금
		합 계
과 제 명		

□ 자격심사(지원사업 대상여부 확인)

No.	항목	검증 내용	통과	여부	No.	항목	검증 내용	통괴	·여부
	위기산업군				4	기업소재지		0	Х
1	영업이익 감소율		0	X	5	부채비율		0	Х
	고용감소율				6	기업규모		0	Х
2	뿌리기업 확인		0	Х	7	국세 지방세 완납		0	Х
3	상시근로자수		0	Х	8	4대보험 완납		0	Х
							자격심사 결과	적합	부적합

□ 서류평가

평가	·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	점		득점	
업력유지(10)	업력유지	■ 뿌리기술 활용 업력 평가 (사업자등록증 기준)	9년이상	6년이상~9 년미만	6년미만~3 년이상	3년미만		
,		(사업사중복중 기군)	10점	8점	6점	4점		
	영업이익	■ 3년 평균 영업이익 감소여부 (표준재무제표가준 20년 대비 20년 21년	5% 이상	4% 이상~ 5% 미만	3% 이상~ 4% 미만	3% 미만		
		22년 영업이익 평균	10점	8점	6점	4점		
기업안정성	이자보상비율	■ 3년 평균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금융비용)	1 이하	1.2미만~1 초과	1.4미만~1.2 이상	1.4이상		
(30)		(표준재무제표기준 20년 21년 22년 평균)	10점	8점	6점	4점		
	매출액 영어이이르	■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3% 미만	5% 미만~ 3% 이상	7% 미만~ 5% 이상	7%이상		
	영업이익률	(표준재무제표기준 20년 21년 22년 평균	10점	8점	6점	4점		
	유형자산 증가율	■ 3년 평균 유형지산 증가 여부 (표준재무제표가 준 20년 대비 20년 21년 22년	3% 미만	5% 미만~ 3% 이상	7% 미만~ 5% 이상	7%이상		
성장가능성		유행사 평균	10점	8점	6점	4점		
(20)	연구개발비율	■ 3년 평균 연구개발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3% 미만	5% 미만~ 3% 이상	7% 미만~ 5% 이상	7%이상		
		(표준재무제표가 준 20년 21년 22년 평균)	10점	8점	6점	4점		
	(증가원 고용증가율 (20년 21년, (고용년	■ 3년 평균 고용증가율 (증가인원/전체 직원수)		5% 미만	10% 미만~ 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5% 이상	
고용안정성		(20년 말 상시 근로자 수 대비 20년, 21년, 22년 말 상시근로자 수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	20점	17점	14점	12점		
(40)	청년근로자 장기근속률	■ 5년 이상 장기 근속 여부 청년근로자 (청년 39세 이하 5년 이상		3% 미만	5% 미만~ 3% 이상	10% 미만~ 5% 이상	10% 이상	
		근속근로사수/선세 식원수) (22년 말 고용보험 사업장 지격취득자 명부 기준)	20점	17점	14점	12점		
7년전(6)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여부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가점 3점					
가점(6) (중복가능)	지역위기산업	■ 뿌리산업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장 (뿌리산업 범위 업종 분류번호 기준)						
		총 점(100+α)						

평 가 위 원 : (인)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현장평가표

	사제	현	황
--	----	---	---

			평가일		
분 야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			
업체명		총사업비(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과 제 명					

□ **평가항목** (* 종합의견 작성은 3줄 이상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별 배점					평가점수			
	0 /1 8 =		수	우		양	가	0/10T
	·생산성 향상 정도	20.0	20.0	16.0	12.0	8.0	4.0	
설비적정성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10.0	10.0	8.0	6.0	4.0	2.0	
(40)	·현장애로개선을 위한 설비 개량의 적정성	10.0	10.0	8.0	6.0	4.0	2.0	
사업추진력 (20)	· 투자능력, 경영안정성	20.0	20.0	16.0	12.0	8.0	4.0	
계획구체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20.0	20.0	16.0	12.0	8.0	4.0	
(40)	·인력·시설 운용계획의 구체성	20.0	20.0	16.0	12.0	8.0	4.0	
•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알하기 좋은 뿌리기업 가 점 연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서비젼기업 연천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라기업 - 1개당 5점, 최대 2개 10점								
총 평가점수(100+α)								

평가의견	

평 가 위 원 : (인)

【서식 8】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협약서

「UI·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전담기관")와 ㈜〇〇〇〇(이하 "주관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사 업 명 :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 과 제 명 :
- 협약대상자
 - 전담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주관기업 :
 - 공급기업 :
- 사업기간 : 2023년 00월 00일 ~ 2023년 00월 00일
- 사 업 비(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 원)
 - 지 원 금 : ₩ 원
 - 주관기업 부담금 : ₩ 원
 - 합 계 : ₩ 원

- 제1조(목적)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의 이행)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주관기업의 역할) 주관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관기업은 사업 수립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2. 주관기업은 지원 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전담기관의 역할) 전담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접수 및 검토

- 2.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사항 등에 대한 승인
- 3. 사업비 지급 및 사후관리
- 4. 사업수행의 중간점검,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등
- 5. 주관기업 만족도 조사

제5조(사업의 수행)

- 1. 주관기업 및 전담기관은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책임 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2. 주관기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 1.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합의에 의한다.
- 2.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하고, 사용된 지원금을 화수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해석상 의문이 되는 사항,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시 관계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8조(비밀유지) 주관기업 및 전담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약의 효력 및 관리)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주관기업 및 전담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 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0조(사업비 지급과 관리)

- 1. 전담기관은 사업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업에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며 주관기업의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2. 주관기업 부담금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 기업은 소요명세 품목별 집행 결과를 증빙하여야 한다.

제11조(신규채용과 고용유지 및 성과 모니터링)

- 1. 주관기업은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지원금 15백만원 당신규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하며, 신규인력 중 1명 이상은 뿌리산업 분야 5년 이내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 2. 주관기업은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 내에 채용약정한 신규인력을 채용 후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중도퇴사 인원의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일까지 근무일을 일할 계산하여 1년에서 뺀 기간만큼의 기간동안 대체 채용하여 유지해야 한다.
- 3. 주관기업은 2023년 11월 30일 이후 최대 36개월 간 고용유지 실태 매출성과 점검 등 성과 모니터링에 대하여 전담기관이 자료를 요청 할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23, 00, 00,

(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 주 호 (인)

(주관기업) 대표 (인)

사용인감계

법인(개인)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협약 체결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0】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정부, 인천광역시, 언론사, 업무계약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 립하고, 환경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인천테크노파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천테크노파크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대·중	· 소 협	력모델	기반	현장애	로 기	배선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1)과제명	국	문							
	기관(약	넓체)명					사업자	번호	
り下せ기せ	주	소					대표전	화	
3)사업기간									
	정부지	기원금					원		
4)사업비(원) (VAT제외)	기업부	부담금					원		
	합	계					원		
	성	명					생년월	일	
5)총괄책임자	부	서					전 :	화	
기둥털색임사	직	위					팩	스	
	E-n	nail					휴대전	화	
	성	명					생년월	일	
2))] [] =] =] =]	부	서					전 .	화	
5)실무담당자	직	위					팩	스	
	E-n	nail					휴대전	화	
상기와 같이 를 제출합니다		・소 협력	모델 기	반 현장애크	르 개	선 지·	원사업」	을 완	료하여 결과보고

총괄책임자: (인)

과제주관기관장(기업대표): (직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1. 채용약정인원이 포함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사업장자격득실확인서 1부 제

출 2. 채용약정인원 근로계약서 1부

서 3. 채용약정인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엑셀 신상정보 등

4. 채용약정인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류

1. 내용요약

가. 주요 내용 및 사업효과

신청 배경	(사업계획서 상 공정 이전 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심으로 기술)
사업 결과	(사업계획서 상 기술한 설비 도입 계획 달성도 및 성과지표 등 사업 결과를 상세히 기술)
사업 효과	(사업 종료 후 보급 확산 계획 및 사업의 기대 효과)

나. 최종결과물 사진 및 설명

구축 전	구축 후
[공정명 1-사진]	[공정명 1-사진]
[공정명 1-설명]	[공정명 1-설명]
[공정명 2-사진]	[공정명 2-사진]
[공정명 2-설명]	[공정명 2-설명]

[※] 양식 수정, 변경 가능

2. 사업비 정산

가. 사업비 총괄

구 분	금 액	구성비(%)
정부지원금		*소수둘째자리까지
기업부담금		*소수둘째자리까지
합 계		100%

나. 집행 내역

(단위: 원)

항 목 구 분	내 역	협약예산	집행금액	잔 액
기자재 및 시설				
작업기능 구축 (작업률,센서시스템, 운용프로그램 등)				
초기운용 및 사용자 교육				
기타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				
합 계				

[※] 소요 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세분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부가세 미포함으로 정산함)를 첨부

[※] 집행내역 항목 구분은 기업별 사업비에 따라 수정(변경) 가능

3.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가. 사업목표 내용 및 결과

- ㅇ 불량률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목표 달성 정도 기입 필수)
- ㅇ 생산성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목표 달성 정도 기입 필수)

4. 고용창출

가. 신규 고용인력 현황

○ 김 oo : 주요 업무 작성

○ 박 oo : 주요 업무 작성

【서식 12】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보고서

가. 사업비 총괄

주관기업명		
구 분	금 액	구성비(%)
정부지원금		*소수둘째자리까지
자기부담금		*소수둘째자리까지
합 계		100%

나. 집행 내역

(단위: 원)

항 목 구 분	내 역	협약예산	집행금액	잔 액
기자재 및 시설				
작업기능 구축 (작업률,센서시스템, 운용프로그램 등)				
초기운용 및 사용자 교육				
기타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경비				
합 계				

※ 소요 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세분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부가세 미포함으로 정산함)를 첨부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u>주관기업 통장사본 첨부 필수</u>)

다. 증빙자료

- ※ 각 항목별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첨부 필수(사본도 따로 제출)
- 증빙자료는 각 내역별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결과조회서 or 입금확인증

구 분	증 빙 자 료
증빙1 세금계산서	
증빙2 이체확인증	

구 분	증 빙 자 료
증빙3 통장사본	
증빙4	

구 분	증 빙 자 료
증빙5	

당사는 위의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사업비 정산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회계정산 결과에 따른 환수금 발생 시 인천테크노파크의 환수조치에 동의합니다.

2023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인)

인천테크노파크 귀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1.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 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인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력서(취업자 경력조사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이후 3년 동안 보유 및 이용(제공)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군, 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본원 및 운영기관(취업지원 운영기관 포함) 업무 관련
- 2.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군, 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본원 및 운영기관(취업지원 운영기관 포함)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3.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군, 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본원 및 운영기관(취업지원 운영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5. 본인은 위 1항~4항의 내용에 따른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	등록변	보호	_
주		소	
편	락	처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과제	현황
--	----	----

		평가일	
분야	대·중·소 협	력모델 기반 현정	당애로 개선 지원
업체명	총사업비(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과 제 명			

□ 평가항목 (※ 종합의견 작성은 3줄 이상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ī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5 1 5 =	메급	수	우		양	가	경기급구
서고니	·생산성 향상 정도	10.0	10.0	8.0	6.0	4.0	2.0	
성과의 질적 수준	·작업환경 개선 정도	10.0	10.0	8.0	6.0	4.0	2.0	
(40)	•설비 개선 정도	10.0	10.0	8.0	6.0	4.0	2.0	
(40)	·사업의 파급효과	10.0	10.0	8.0	6.0	4.0	2.0	
설비교육 및 안전환경 수준 (20)	·설비교육 수준	10.0	10.0	8.0	6.0	4.0	2.0	
	·작업자 안전성 정도	10.0	10.0	8.0	6.0	4.0	2.0	
사업비집행 적절성 (10)	•견적서 대비 사업비집행 내역	10.0	10.0	8.0	6.0	4.0	2.0	
사업의 타당성 (15)	·사업 내용의 타당성	15.0	15.0	12.0	9.0	6.0	3.0	
신규채용인력 달성도 (15)	· 채용약정 신규인력 운용의 적정성	15.0	15.0	12.0	9.0	6.0	3.0	
	총 평가점수(1(00)						

평가의견	

평 가 위 원 : (인)

【서식 15】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요청서

지원금 지급 요청서

- 1. 사업명: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 2. 총 사업비 구성 현황

주관기업명	기업부담금 (20% 이상)	정부지원금	총 합
(예사)00(주)	7,500,000	30,000,000	37,500,000

3. 지원금 지급 계좌

공급기업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예시)OO(주)	홍길동	신한은행	111-222-3333333

4. 지급 시기

구 분	지급 시기
지원금 (100%)	사업완료에 대한 최종평가 이후 3주 이내 ※단, 최초 신청금액에게 금액이 감소될 경우 감소 된 금액에 맞춰 잔금 지급

상기 내용과 같이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지워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주관 기업:

대 표 자: (인)

[붙임1] 주관기업 통장사본 1부

[붙임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붙임3]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붙임4]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조기 종결 신청서

과 제 명	
사업기간	
주관기업명	
지원사업 달성유무	
채용약정 인원 채용유무	
사업비 집행 완료 유무	
기타사항	

당사는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신규채용과 사업이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지원사업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

2023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인)

【서식 17】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 변경 신청서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 변경 신청서

과 제 명								
주관기업명				대표자	·명			
주소		연 락	처					
변 경 전	내용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금	
шл÷	내용			·		·		
변 경 후	사업비		보조금	3			자부담금	
변경사유						·		
향후계획								
기타사항								

당사는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 사업」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 내용 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인)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 포기 신청서

주관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연 락 처	
지원분야		
선정금액		
포기사유		

당사는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 사업」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 사업 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인)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완료 기간연장 신청서

과 제 명		
주관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연 락 처	
변 경 전 완료일자		
변 경 후 완료일자		
변경사유		
향후계획		
기타사항		

당사는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 사업」에 지원결정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사업완료 기간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인)

Q1.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에 만족하셨나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① 매우만족 ②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④, ⑤" 경우, 답변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기입해주세요(50자 이상)
Q2.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진행 후 얼마의 매출 증대가 예상 되시 나요?
① 20% 이상 증가 ② 10 ~ 20% 증가 ③ 0 ~ 10% 증가 ④ 증대없음 ⑤ 매출감소 "⑤" 선택시, 감소원인 및 금액을 상세히 기입해주세요(20자 이상)
Q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진행 후 생산성 향상이 얼마나 되 었나요?
① 증대없음 ② 10% 미만 ③ 10 ~ 20% ④ 20 ~ 30% ⑤ 30% 초과 Q4.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진행 후 불량률 감소가 얼마나 되 었나요?
① 5명 이상 증가 ② 3~4명 증가 ③ 1~2명 증가 ④ 증대없음 ⑤ 감소 "⑤" 선택시, 감소원인 및 인원을 상세히 기입해주세요(20자 이상)
Q6.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이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하다 생각하나요?
1) 예 2) 아니요 - 답변에 따른 의견을 상세히 기입해주세요
주관기업명 :
대 표 자 : (인)

별 표

[별표	1] 대	· 중·	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표	• • • • • • • • • • • • • • • • • • • •	•••••	53
[별표	2] 대	· 중·	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	54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표

□ 주관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 한
·천재지변, 주관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업기간
·주관기업이 지원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12개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 하는 경우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운영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확인된 경우 	2년 (24개월)
· 법령 또는 운영지침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채용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환수 또는 3년 (36개월)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1. 주조산업 (17)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31(기반공정)	주철관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311(기반공정)	선철주물주조업
24312(기반공정)	강주물 주조업
24321(기반공정)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기반공정)	동주물 주조업
24329(기반공정)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9230(기반공정)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294(기반공정)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열처리산업 (2)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21(기반공정)	금속 열처리업
29150(기반공정)	공업용로, 전기로

4. 표면처리산업 (1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기반공정)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5922(기반공정)	도금업
25923(기반공정)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기반공정)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기반공정)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기반공정)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기반공정)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8909(기반공정)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표면처리), 아크 용접기 및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용접)
29299(기반공정)	금속 표면처리기

5. 소성가공산업 (10)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21(기반공정)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기반공정)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기반공정)	철강선 제조업
24221(기반공정)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기반공정)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기반공정)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기반공정)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기반공정)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기반공정)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24	액암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6. 용접산업 (7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32(기반공정)	강관 제조업
24133(기반공정)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기반공정)	기타 1차 비칠금속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기반공정)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기반공정)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기반공정)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5(기반공정)	용접봉
26224(기반공정)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기반공정)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기반공정)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기반공정)	전자카드 제조업
26294(기반공정)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기반공정)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기반공정)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29199(기반공정)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1(기반공정)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기반공정)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기반공정)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기반공정)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기반공정)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기반공정)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기반공정)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기반공정)	강선 건조업
31112(기반공정)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기반공정)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기반공정)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01(기반공정)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기반공정)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기반공정)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기반공정)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기반공정)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기반공정)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기반공정)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7. 사출・프레스산업 (2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9292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8. 정밀가공산업 (3)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221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9. 적충제조산업 (11)

<u>5. 40/11-11 11</u>	(1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산업 (4)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1	기타종이가공기계

11. 로봇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2. 센서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5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23.7.17)

□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13402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 정밀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적충(積層)제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단, 복층절연유리에 한함)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단, 비파괴검사에 한함)